

# BTL사업계획(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승인안

|          |     |
|----------|-----|
| 의안<br>번호 | 206 |
|----------|-----|

제출년월일 : 2005. 11. 25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 안 이 유

우수한약 유통시설을 보건복지부로부터 BTL사업으로 확정받아 2006년 민간투자자로하여 대행사업 추진후 2008년부터 20년 동안 국·도비 및 군비로 시설투자비를 균등상환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임으로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우리군이 2006년도에 실시할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은 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사업으로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용역비 15억원(군비투자), 시설투자비 100억원(민간투자)등 총 115억원 임.

##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다. 기타 참고사항 : 없음

# BTL사업계획(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승인안

## □ 사업목적

○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고산지대 한약재(당귀, 황기 등)를 변질없이 장기간 보관을 하기 위한 항온·항습 등 종합적인 유통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국민보건증진과 수입한약재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한 투자효율 제고와 우리군 재정운영 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우리군이 이를 임대해서 쓰는 BTL 민간투자방식으로 2008년부터 20년동안 국·도비 및 군비로 시설투자비를 균등상환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이므로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외 16필지
- 사 업 비 : 115억
  -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용역비(군비투자) : 15억
  - 시설투자비(민간투자) : 100억
- 사업규모 :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5,000톤 저장) 1식
  - 부 지 : 31,736㎡
  - 저장시설(항온·항습저장) : 9,247㎡
- 사업기간 : 2006. 1 ~ 2007. 9월

## □ 민간투자비 상환

- 상환계획 : 민간투자비의 원금과 이자를 20년간 균등상환
  - 상환금액 : 210억
  - 원금 100억, 이자 110억

【년도별 상환계획】 - 1

(단위: 억원)

| 년도별  |    | 계     | 원금   | 이자    | 년도별  |    | 계     | 원금   | 이자    |
|------|----|-------|------|-------|------|----|-------|------|-------|
| 합 계  |    | 210   | 100  | 110   |      |    |       |      |       |
| 2008 | 소계 | 10.5  | 5    | 5.5   | 2013 | 소계 | 10.5  | 5    | 5.5   |
|      | 국비 | 5.25  | 2.5  | 2.75  |      | 국비 | 5.25  | 2.5  | 2.75  |
|      | 도비 | 2.625 | 1.25 | 1.375 |      | 도비 | 2.625 | 1.25 | 1.375 |
|      | 군비 | 2.625 | 1.25 | 1.375 |      | 군비 | 2.625 | 1.25 | 1.375 |
| 2009 | 소계 | 10.5  | 5    | 5.5   | 2014 | 소계 | 10.5  | 5    | 5.5   |
|      | 국비 | 5.25  | 2.5  | 2.75  |      | 국비 | 5.25  | 2.5  | 2.75  |
|      | 도비 | 2.625 | 1.25 | 1.375 |      | 도비 | 2.625 | 1.25 | 1.375 |
|      | 군비 | 2.625 | 1.25 | 1.375 |      | 군비 | 2.625 | 1.25 | 1.375 |
| 2010 | 소계 | 10.5  | 5    | 5.5   | 2015 | 소계 | 10.5  | 5    | 5.5   |
|      | 국비 | 5.25  | 2.5  | 2.75  |      | 국비 | 5.25  | 2.5  | 2.75  |
|      | 도비 | 2.625 | 1.25 | 1.375 |      | 도비 | 2.625 | 1.25 | 1.375 |
|      | 군비 | 2.625 | 1.25 | 1.375 |      | 군비 | 2.625 | 1.25 | 1.375 |
| 2011 | 소계 | 10.5  | 5    | 5.5   | 2016 | 소계 | 10.5  | 5    | 5.5   |
|      | 국비 | 5.25  | 2.5  | 2.75  |      | 국비 | 5.25  | 2.5  | 2.75  |
|      | 도비 | 2.625 | 1.25 | 1.375 |      | 도비 | 2.625 | 1.25 | 1.375 |
|      | 군비 | 2.625 | 1.25 | 1.375 |      | 군비 | 2.625 | 1.25 | 1.375 |
| 2012 | 소계 | 10.5  | 5    | 5.5   | 2017 | 소계 | 10.5  | 5    | 5.5   |
|      | 국비 | 5.25  | 2.5  | 2.75  |      | 국비 | 5.25  | 2.5  | 2.75  |
|      | 도비 | 2.625 | 1.25 | 1.375 |      | 도비 | 2.625 | 1.25 | 1.375 |
|      | 군비 | 2.625 | 1.25 | 1.375 |      | 군비 | 2.625 | 1.25 | 1.375 |

【년도별 상환계획】 - 2

(단위: 억원)

| 년도별  |    | 계     | 원금   | 이자    | 년도별  |    | 계     | 원금   | 이자    |
|------|----|-------|------|-------|------|----|-------|------|-------|
| 2018 | 소계 | 10.5  | 5    | 5.5   | 2023 | 소계 | 10.5  | 5    | 5.5   |
|      | 국비 | 5.25  | 2.5  | 2.75  |      | 국비 | 5.25  | 2.5  | 2.75  |
|      | 도비 | 2.625 | 1.25 | 1.375 |      | 도비 | 2.625 | 1.25 | 1.375 |
|      | 군비 | 2.625 | 1.25 | 1.375 |      | 군비 | 2.625 | 1.25 | 1.375 |
| 2019 | 소계 | 10.5  | 5    | 5.5   | 2024 | 소계 | 10.5  | 5    | 5.5   |
|      | 국비 | 5.25  | 2.5  | 2.75  |      | 국비 | 5.25  | 2.5  | 2.75  |
|      | 도비 | 2.625 | 1.25 | 1.375 |      | 도비 | 2.625 | 1.25 | 1.375 |
|      | 군비 | 2.625 | 1.25 | 1.375 |      | 군비 | 2.625 | 1.25 | 1.375 |
| 2020 | 소계 | 10.5  | 5    | 5.5   | 2025 | 소계 | 10.5  | 5    | 5.5   |
|      | 국비 | 5.25  | 2.5  | 2.75  |      | 국비 | 5.25  | 2.5  | 2.75  |
|      | 도비 | 2.625 | 1.25 | 1.375 |      | 도비 | 2.625 | 1.25 | 1.375 |
|      | 군비 | 2.625 | 1.25 | 1.375 |      | 군비 | 2.625 | 1.25 | 1.375 |
| 2021 | 소계 | 10.5  | 5    | 5.5   | 2026 | 소계 | 10.5  | 5    | 5.5   |
|      | 국비 | 5.25  | 2.5  | 2.75  |      | 국비 | 5.25  | 2.5  | 2.75  |
|      | 도비 | 2.625 | 1.25 | 1.375 |      | 도비 | 2.625 | 1.25 | 1.375 |
|      | 군비 | 2.625 | 1.25 | 1.375 |      | 군비 | 2.625 | 1.25 | 1.375 |
| 2022 | 소계 | 10.5  | 5    | 5.5   | 2027 | 소계 | 10.5  | 5    | 5.5   |
|      | 국비 | 5.25  | 2.5  | 2.75  |      | 국비 | 5.25  | 2.5  | 2.75  |
|      | 도비 | 2.625 | 1.25 | 1.375 |      | 도비 | 2.625 | 1.25 | 1.375 |
|      | 군비 | 2.625 | 1.25 | 1.375 |      | 군비 | 2.625 | 1.25 | 1.375 |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1994. 3. 16, 1999.8.31>

1. 조례의 제정 및 폐기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사회개발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제1호 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999.2.8, 1999.9.7, 2001.1.16, 2002.12.11, 2003.7.29, 2003.12.30, 2004.12.31, 2005.1.27, 2005.3.31, 2005.5.31, 2005.8.4>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